

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!

 <p>미래창조과학부</p>  <p>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</p>	<h1>설 명 자 료</h1>	<p><a href="http://www.msip.go.kr">http://www.msip.go.kr</a></p> <p><a href="http://www.kcc.go.kr">http://www.kcc.go.kr</a></p>
<p>2013. 12. 12(목) <b>배포시점</b>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<p>문의 :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(02-2110-1930), 이정순 사무관(02-2110-1933)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영만 과장(02-2110-1510), 황지은 사무관(1516)</p>		

##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성부터 해소하라 제하의 보도와 관련,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- 언론사명 : 전자신문(6면)
- 보 도 일 : 2013. 12. 12.(목)
- 보도요지
  -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개연성이 있어 해석,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  - 추가 지급 공시 규정 구체화, 분리요금제의 구체적 할인금액 규모, 긴급 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기간 세분화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
- 설명내용
  - 現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 ‘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금지’(시행령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금지)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,
    - 단말기 보조금·유통에 관한 특별법인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이 제정되면 신법,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이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.

-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제16조(다른법률과의 관계)에서도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(수정대안)하여 양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있습니다.
- 이통사, 대리점·판매점의 보조금 공시 방법,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에 대한 기준, 긴급중지 명령의 발동요건 등은 시행령, 고시 등 하위규정 위임사항으로,
- 앞으로, 법 제정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법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. 끝.